

---

# 긴급경영안정(재해)자금(대리대출) 신청 안내자료

---

# 1. 개요

- 사업목적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 용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관계기업\* 당 최고 1억원 이내
    -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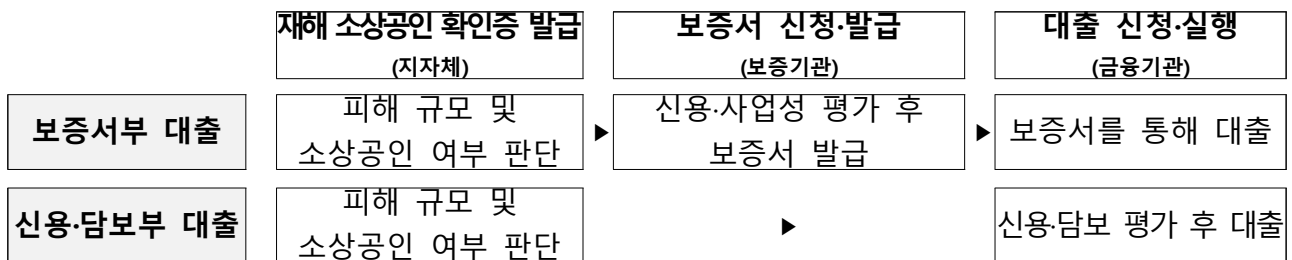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등 별도 용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회 심의 확정(안)에 따름

□ 신청기간

- '26년 1월 5일(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용자절차



- (보증서부) 보증기관에서 평가 후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취급은행에서 신용, 물적담보 평가 후 대출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피해 규모 및 소상공인 여부 판단

- (지자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소상공인 여부 판단하여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② 담보결정: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물적담보) 순수신용 및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③ 대출실행: 대리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실행

\* 취급은행(18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한중앙회, 아이엠,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신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정의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 훼손하는 행위
유형	피해 유발 행위	① <b>(계약불이행)</b>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정책 목적 훼손	② <b>(대출심사 허위 대응)</b>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③ <b>(허위 대출약속)</b>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b>(부정청탁)</b>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한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⑤ <b>(정부기관 등 사칭)</b>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사칭에 해당
		⑥ <b>(부당 보험영업 행위)</b>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 기타사항

- 본 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불필요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 당해연도 자금별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2. 지원대상

###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①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단, 비영리법인이 [붙임1]의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에 해당할 경우 정책자금 신청 가능

####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대출제한대상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 채무자 이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구 분	내 용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용도판단정보</td> <td>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td> </tr> <tr> <td>공공정보</td> <td>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구 분	내 용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정책자금 용자제외업종	- 정책자금 용자제외업종[붙임4]을 영위하는 경우						
6.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에서 성공불용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li> <li>2. 대출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제재조치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li> <li>3.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li> </ol>						
7. 허위 또는 부정신청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8.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2026년도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소상공인 확인 기준

##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sup>①</sup> 중 소상공인<sup>②</su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sup>③</sup>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조]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 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봄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①~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
  - 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⑥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업종구분 방법

##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업종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 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 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구분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류명	발급처
<b>사업자 확인서류</b>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b>상시근로자 확인서류</b>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료급여증명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b>연구전담요원 확인</b>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b>매출액 확인서류</b>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b>거래실적 확인</b>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b>풍수해 보험가입</b>	보험가입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소기업중앙회
<b>여성 기업</b>	여성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
<b>장애인 기업</b>	장애인기업확인서	
<b>자영업자 고용보험</b>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b>전통시장 화재공제</b>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확인서	전통시장화재공제(https://fma.semas.or.kr)
<b>노란우산 공제</b>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노란우산(www.8899.or.kr)
<b>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b>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한국산업단지공단(www.factoryon.go.kr)
<b>은행권 컨설팅</b>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종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부산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 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남구, 울주군)
대구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031)677-6188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충청·호남·제주

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충청·호남·제주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운프라자 4층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용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충남)보령센터	(041)931-4443 (041)931-4448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강원지역본부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북지역본부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보은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영동군
전북지역본부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66-0199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남지역본부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호, 503호)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